

2016년8월의 뉴스

이번 뉴스로, 우리 Grant Thornton Việt Nam(주)는 고객님들에게 참고로 다음에 조세, 세관 정책을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1. 재정부의 안내로서 2016/07/01일 부터 VAT환납 및 지연납세 한계금에 대한 관연.
2. 2016년8월1일부터 각종세금,국내수금에 대한 국가금고에 납입절차 관연
3. 고객들에게 후원금지급은 합법적지출이 아니라고 확정된다.
4. 개인용 집임대료의 비용.
5. 근로자에게 석사교육비용지급은 합리, 합격비용으로 계산된다.
6. “베트남과 미국사이의 외국에 있는 각 계정에 대한 조세주누. 법률을 진행하기위한
삽입서류와 쌍방 협정“의 승인.
7. 외국자본금이 있는 기업들의 하자상품의 임시 취소, 취소 및 세금환부.
8. 임가공계약의 효력기한에 대한 조정 절차.
9. 제출기업의 상품 매매 영업.



1. 2016/07/01일 부터 VAT환납 및 지연납세 한계에 대한 관연

재정부는 그 문제에 관하여 최근에 문서로 다음처럼 보충 안내한다:

- **부가가치세 환부:** 기업들은 VAT금액의 2016/07월(월별 계산한 경우)혹은 2016년 3분기의 세계산 하기전 (분기별 계산의 경우)에 세금계산기간전에 발생된VAT금액을 다 공제되지 않고 2013/12/21일에 재정부의 문서219/2013/TT-BTC의 제18조 1항의 VAT환납조건 만족되면 세국기관도 기업의 세환납 제기문서를 접수하고 법규대로 환납제기서를 해결한다.

• 지연 납세금액:

- ✓ 2016/07/01일 전에 발생한 세금미납항목이지만2016/07/01일이후에도 납세되지않으면 지연납세의 0,03%/일의 계산으로 옮긴다.
- ✓ 납세자는 2016/07/01일 전에 발생한 세금에의 부족으로 계산한 경우이지만 2016/07/01일이후에 국가 세무기관의 재확인, 검사로 발현하거나 납세자의 스스로 발현된 경우에 법규 납세규정일 부터 2016/06/ 30일까지 지연납세의 0,05%/ 일의기준 (혹은 매 시기의 법규에 적합된 기준으로)을 적용하고 2016/07/01일부터 국고에 납세된 날까지 세금계산의 부족금에 대한 0.03%/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6년8월2일부터 각종세금, 국내수금에 대한 국가금고에 납입 절차

재정부는 문서84/2016/TT-BTC호를 발급해서2016년8월2일부터 각종세금,국내수금(수출,수입단계에 발생된 소득 납금항목들의 미포함)에 대한 국가금고에 납입절차를 안내해준다.

우리Grant Thornton Việt Nam 은 다음 중요내용들을 고객님의 참고로 주의한다:

납세자는 국가금고에 납금서를 작성하는데 국세청의 전자정보Web를 통해서 납세진행 전과정에 업무 처리 빠르고 정확하고 정보비밀유지로 도와주는 목적이 있음으로 문서84/2016/TT-BTC호는 국고에 납금안내를 했고 (문서84/2016/ TT-BTC호 와 같이 삽입된 양식C1-02/NS호); 납금서, 대신납금서를 직접 작성하는 경우에 따라 다음 8개 정보 크룹에 다르다:

- (1) 납세금액의 종류에 대한 통신.
- (2) 납세자와 대신으로 납세자에 대한 정보.
- (3) 은행/국고 및 납세로 대금 계정 정보 .

- (4) 국가금고에 대한 납금 정보.
- (5) 구고의 계정에 대한 정보.
- (6) 실권있는 기관의 문서에 따른 납금정보 .
- (7) 수금관리기관의 이름에 대한 정보 .
- (8) 국고에 납금하는항목에 대함 정보 .

납금서를 완료하기 위해 납금자는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납세 시스템의 국고에 납금서를 보낸다.

그 외에, 통지서 제 84호도 다음경우에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 은행공급의 전자납세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납세에 대한 안내 (제 8 조) .
- 수금협력은행, 수금위임은행, 국고기관의 거래장소에 납세증빙 작성의 구체적 안내 (제 9조) .
- 납세의수/납 정보의 잘못, 검토, 조정에 대한 규정의 변경, 보충 . (제 17조). 그에 따르면 재무부는 세국서 와 국고에 대한 납세자자, 다른조직이 검토진행, 세금 수/납정보조정의 경우에 양식C1-07/NS을 사용규정한다.



3. 고객님에게 후원 지급을 합리의 지급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다.

2016/05/27일에 Hồ Chí Minh 세국은 고객후원금의 공제 된 비용에 대한 기업에 답변문서를 발급했다. 그에 근거하면 :

회사는 고객들에게 자금이나 물건을 후원해서 외국회의참석출장, 사건의 고객식사, 각 명절날 휴무의 지원을 교육, 의료, 자연재해국복, 가난한사람의 집짓는 지원항목이 아니면 그발생이 법인세계산시에 공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다.



4. 개인의 집임대료의 지급 :

Hà Nội 세국은 개인의 집임대료에 대한 정책을 문서로 다음 안내한다 :

그에 근거하면 기업에 임대해준 임대자산이 있는 개인, 가족에 개별적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기업이 자산을 임대사용시에 공제비용으로 정해준 서류들은 자산임대 계약, 대금 증빙, 개인에 대신납세증빙 (임대측이 대신으로 납세의 경우가 있으면) 들고 동기에 문서 제 78/2014/TT-BTC.호의 양식01/TNDN처럼 작성하지도 않다.

국세청의 결정서 제2469/QĐ-TCT호의 31/12/2015/12/31일에 발표로 개인의 자산임대 활동에 대한 세금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개인, 가정들이 자산임대해준 소득이 발생경우 예 : 셋집, 기계설비임대, 차량 임대용으로 소득의 세기준까지 달해서 (총소득이 01억VND/년 이상 경우) 세금계산 계약신고를 해서 세무서가 매 계약건의 관리 Code를 발급해준다.

때문에 문서 2469/QĐ-TCT호의 내용처럼 계약신고 사본을 개인, 가정의 공급을 추가로 공급해줘 향후에 세국과 같이 설명한 필요가 있다.

5. 근로자의 석사 교육비용을 합리 합법비용으로 계산된다.

Hà Nội 세무서는 문서46804/CT-HTr호를 2016/07/13일에 발급해서 근로자에게 석사교육비용지급에 대한 정책을 설명해준다.

그에 근거하면 근로자에게 석사교육 비용지급을 기업의 세금부담 소득 계산시 공제 된다. 합리, 합격 비용으로 계산하기 위해 기업은 국고에 속하는 교육학비수금이면 학비수금증빙 보관 혹은 국고에 속하지 않는 교육의 학비수금이라면 규정으로된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다.



6. Việt Nam 과 미국 사이 미국의 외국에 있는 각 재정계정에 대한 조세준수 법률을 진행 하기 위한 쌍방협정 및 삽입문서”의 협정 결재 .

2016/06/30일에 정부는 의령 제57/NQ-CP호를 발표해서 “ Việt Nam 과 미국사이 미국의 외국에 있는 각 재정계정에 대한 조세준수 법률을 진행하기 위한 쌍방협정 및 삽입 문서” 결재해준다.

협정발급으로 미국의 외국에 있는 각 재정조직에 계정이 있는 미국 개인, 조직에 대한 조세준수 법률을 진행하기 위한 규정해준 목적이 있다. 본 법률이 미국법규의 세부담 대상자들의 탈세행위를 막아준다. 그에 따르면 세준수법률의 주의 내용으로서 미국의 외국에 있는 각 재정조직들이 미국 세무국에 조직이나 개인 고객의 정보를 충분적, 정확히 공급해줘야 한다.

각 재정조직들이 그런 정보제공을 거절하는 경우에 소득세의 한 공제항목은 미국원천이 있는 증권소득 (i) , 미국은행 혹은 미국은행의 해외 지점의 예금계정의 이자 (ii) 및 미국의 증권매매 총수금(iii) 등의 30%비율로 공제된다.

우리들은 고객님들에게 협정과 삽입서류들을 그 내용들의 발포 직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 겠다..

7. FDI기업들의 하자상품에 대한 임시 취소, 취소, 세환납의 절차 관련

세관에 대한 관리 검사국의 문서 제849/GSQL-GQ2 호의 2016/06/23일 발표로서 FDI기업들의 하자상품에 대한 임시 취소, 취소, 세환납의 절차를 다음처럼 안내한다:

그 예근거하면 FDI기업은 문서 04/2007/TT-BTM호의 2007/04/04일 발급으로 반영된 수입물건 청산조건과 적합한 근거로 수입세부담된 수입물의 청산 작업을 스스로 선택권이 있다.

기업은 영업용 수입방법으로 상품수입된 경우에 물건 하자로 청산처리하면 재정부의 2015/03/25일에 문서 제38/2015/TT-BTC호의 제 114조의 규정에 대한 세환납대상으로 속하지 않다.

8. 임가공 계약서의 효력기간의 조정 절차

세관총국은 임가공계약의 기한조정에 대한 안내를 한다. 그에 따르면 :

규정 제187/2013/NĐ-CP호의 2013/11/20일에 의하면 임가공측과 임가공발주측은 가공기간을 연기한 필요가 있을때 관련측들이 보충 합의서를 임가공계약서 만료하기전에 서명해야 한다.

임가공계약완료 혹은 만료될때 관련측들이 정부의 의령 187/2013/NĐ-CP호의 2013/11/20일 규정처럼 계약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 총국은Hồ Chí Minh City 세관국을 요구해서 임가공기간조정을 제기하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만들고 만약 기업이 임가공계약시간의 조정을 이용해서 원료, 잉여 원자재, 폐료, 기계,설비 등의 처리를 지연하 기위한 의혹이 있으면 규정따라 기업현장에 원자재사용 현황검토를 진해하고 집중방안 처리를 한다.



9. 輸出加工企業（EPE）による物品売買事業

ドンナイ省税関局のガイダンスによれば、

- 輸出加工企業（EPE）が、ベトナムにおける物品売買活動および物品売買に直接関連する各種活動の事業ライセンスに基づいて支店を設立している場合、その支店は、発行を受けたライセンス内容を実施すべく活動を継続します。
- 支店の活動を維持する計画がない場合、EPEは、支店活動停止の手続きを行います。同時に、物品売買活動を継続するために、EPEは、ベトナムにおける物品売買活動に関連する売上、費用を区別して計上する会計帳簿を別途準備して、かつ、製造活動のための物品保管場所から隔てた場所を売買活動用の保管場所として用意する必要があります。



본 소식통의 정보들은 효력 이있는 법규 와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 우리 GT Vietnam(주)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된 고객님 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생각한다.

(주) Grant Thornton VietNam은 본 소식통 의 잘못점에 대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 에 손해 를 입은데 책임지지 않다. 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거나 Grant Thornton VietNam 의 협조를 받으 려면 저희들의 전문가들하고 연락 및 합의 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Hanoi Office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4 3850 1686

F + 84 4 3850 1688

Hoang Khoi

Tax Partner

D +84 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Phạm Vinh

한국고객 님 지원자

M 0913 02 4204

E 50vinhphamngoc@gmail.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4 3850 1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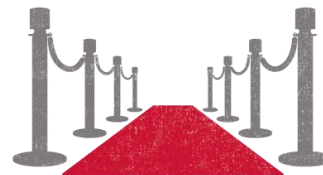
E Kaoru.Okata@vn.gt.com

Phạm Ngọc Long

Tax Giám đốc Tư vấn Thuế

D +84 4 3850 1684

E Long.Pham@vn.gt.com



고객님은 우리의 업데이트 소식을 Download 하시려면 다음 Web에 검색해주신것을 바란다.

www.grantthornton.com.vn

Ho Chi Minh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8 3910 9100

F + 84 8 3914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Hong My

Tax Director

D +84 8 3910 9275

E HMy.Tran@vn.gt.com

Tomohiro Noriok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8 3910 9205

E Tomohiro.Norioka@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